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일본은 1인 가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로 사후 장례 및 사무처리를 부탁할 친족이 없는 등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과 신탁 등을 활용하여 사후 사무처리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본 상품은 위탁자가 사망 시, 신탁회사의 위탁된 사망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사후 사무위임 계약 내용에 따라 사후 사무처리 등을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정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뒤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임

- 일본은 저출산·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활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후(死後) 처리를 부탁할 친족이 없는 등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21만 명(28.9%)으로 '75세 이상 인구(1,867만 명, 14.9%)'가 '65~74세 인구(1,754만 명, 14.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층의 사후 사무처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¹⁾²⁾
 -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부부세대, 1인 가구(단신(單身)) 노인 증가 등 사생활 중시에 따른 소가족화 현상이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음³⁾
 - 2020년 1인 가구 고독사 수는 6,09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60~70대 남성(2,407명)이 73%로 여성(647명)에 비해 고독사하는 경향이 강하고 50대 1인 가구 가운데 고독사 수도 남성이 82%로 여성에 비해 많음
- 일본 푸르덴셜생명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의 '종활(終活)⁵⁾지원을 통해 보험과 신탁 등을 활용하여 사후 사무처리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본 서비스는 신탁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고객이 사망 시, 생명보험신탁 계약에 따라 사후 사무처리 위임 계약을 맺고 관련된 사후 사무처리 및 발생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사후 사무처리 위임 계약이란, 위임자가 제3자에 대해 본인이 사망 후 여러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의 대리권을 생전에 부여하는 것으로 사후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임⁶⁾

1) 내각부(2022.6.14.), "2022년판 고령사회백서"

2) 한국은 현재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30년 뒤인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이중 70대가 1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10명 중 3명이 비혼으로 독거노인의 1인 가구 수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 도쿄도 경찰의무원의 의료심사관실에서 조사하는 독거사 통계(2020) 자료로 도쿄 중심부에 해당하는 23구의 통계 수치임

4) 일본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자회사인 푸르덴셜신탁회사는 2022년 8월 1인 가구 등의 사후 사무 불안을 대비하는 '종활지원 마이엔딩 케어' 상품을 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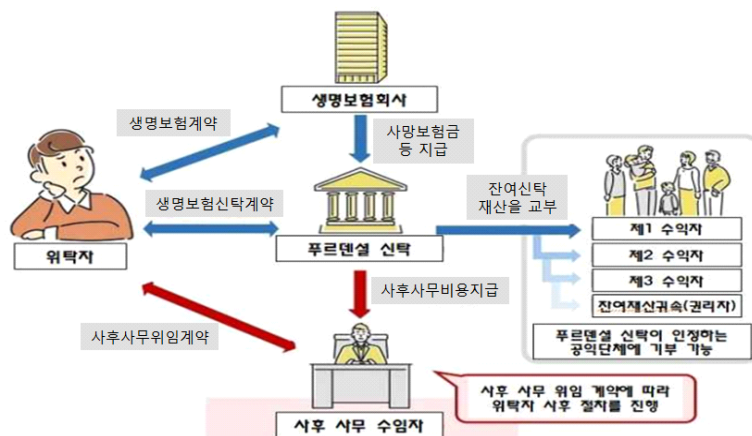
5) 종활(終活)은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평균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을 생전에 준비한다는 신조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함

- 동 서비스는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치매 등 지병이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하고 싶은 경우, 친족 등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사후 사무처리는 구체적으로 친족 등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의료비, 관리비, 시설이용료 등 미지급 비용을 정산, 화장 및 납골 등에 관한 처리, 디지털 유품을 포함한 고인의 유품 정리 등이 포함됨

○ 사후 사무처리 서비스 지원 절차는 위탁자가 사망 시, 수익자 등으로부터 해당 신탁회사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탁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게 됨

- 생명보험 계약자는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청구권을 신탁, 위탁자가 사후 사무를 처리하는 사후 사무수임자와도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후 사무위임계약에 드는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게 됨
- 신탁재산 지급 절차는 위탁자가 사망 시, 수익자 등으로부터 해당 신탁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탁자 등으로부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탁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게 됨
- 사망보험금 등이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이 되면, 신탁회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시점별로 소정의 신탁보수를 수수한 뒤, 사후 사무처리 수임자로부터 청구되는 사후 사무비용을 지급하게 됨⁷⁾
- 이때 신탁회사가 사후 사무처리 수임자에게 사후 사무처리 위임 비용을 지급하고, 사후 사무처리 수임자로부터 신탁 회사에 완료 보고를 거친 뒤 신탁회사는 잔여신탁 재산을 수익자 등에 교부하게 됨

〈그림 1〉 사후 사무처리 서비스 지원 절차



자료: 푸르덴셜생명(2022. 8), “お客様の死後事務の不安に備える新サービス「終活サポート~マイ・エンディング・ケア~」をリリースいたしました”

○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한 사후 사무관리 서비스는 위탁자가 생전에 사후를 직접 설계 및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생명보험 자회사 형태의 신탁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6) 일본 민법 제653조(위임의 종료 사유)는 ‘위임자 또는 수임자의 사망’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2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임계약의 사후 유효성과 관련하여 특약이 있다면 사후에도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이후 장례를 위임한 ‘사후 사무처리 위임 계약’이 가능해짐
 7) 신탁 개시 시, 보험금 청구 및 신탁 설정 사무처리 대가로 분할교부 시에는 수령보험금 총액의 2.2%를 수수료로 신탁재산에서 공제하며, 일괄 교부 시에는 신탁 계약 1건당 11만 엔을 신탁재산에서 공제함. 신탁 개시부터 신탁 종료 시까지 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정례교부 비용은 신탁재산 관리 및 교부, 거래보고 서류 등의 작성 업무, 수익자의 이행 수속의 대가로 매년 3월말에 1건당 연간 2.2만 엔을 관리보수를 공제함